

공정위, 지주회사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 지주회사 설립요건 일부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월)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 등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본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후 금년 7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직접 상호출자 금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을 50% 이상 유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완전해소 등을 지난달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 발표시에 동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동 기준을 유지할 경우 구조조정을 촉진할 지주회사의 설립이 어려워 독립적인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자회사를 손쉽게 분리하거나 매각하고 주력부문에 외국인자본을 유치하는 등 소위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당초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했던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에 대한 기준 중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요건, 그리고 손자회사 설립문제의 경우 상당히 완화하여 30대 기업이라도 그룹 전체가 아닌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 채무보증이 해소되면 동일인이나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

록 했다.

따라서 오는 7월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지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는 30% 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여 손자회사를 주는 것은 당초 방침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률 개정 이전부터 소유한 손자회사의 주식은 2년 내에 처분하면 되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A/S 전담 회사, 판매회사 등 자회사의 효율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되 기존 회사가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에는 1년동안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그룹 전체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해야 허용한다는 방침을 완화하여 신설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다른 계열사간의 공정거래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보증을 사전에 해소할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금융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방침대로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지주회사로 하여금 매년 지주회사 및 자회

사의 사업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책으로 총 이사수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가 비상장회사로 출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감시를 통하여 다수의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상장회사의 이사수가 3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사외이사를 총 이사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주회사는 1명 이상의 공익대표 등의 사외이사를 두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영업양도나 합병, 매각 등 중요사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지주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하는 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 주식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등을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설 립 요 건	당 초 안	최 종 안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이상 금지	▶ 원칙 : 100% 이상 금지 - 예외 :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1년간 100% 이상도 가능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직접 상호출자	완전 금지	▶ 동일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	50% 이상 손자회사 금지	▶ 원칙 : 50% 이상 - 예외 :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50% 미만도 가능 (개정법을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는 30%도 가능) ▶ 원칙 : 손자회사 금지 - 예외 :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전에 소유한 주식은 2년간 인정
금융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	완전 금지	▶ 동일
30대 기업집단 지주회사	그룹 전체의 계열사 간 빚보증 완전 해소해야 허용	▶ 신설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간의 빚보증을 완전 해소하면 허용